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 2989호

제출년월일 2022. 03. 07. 제 출 자 오강현 의원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2년 3월 07일 오강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행동강령 규정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3조)
-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(안 제4조)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(안 제6조)
- 알선·청탁 등의 금지(안 제12조)
- 금품 등의 수수 금지(안 제15조)
-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(안 제17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을 통해 의회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및 공무원의 윤리성, 부패 발생 사전 예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.